

Ⓣ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정책보험국장 최윤배(6530)/ 보험팀장 김기성(6571)/ 대리 고영옥(6611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000호

시행일자 2015. 10. 29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「약제 감수성검사 결과」 제출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-1321호(2015. 10. 27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원칙) 신설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(VRE 등)에 대한 「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자료 On-Line 제출시스템」 오픈을 안내하여왔습니다.(* 메르스(MERS) 관련으로 요양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음)

3. 이에 대한 자료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,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요양기관 자료제출 경로

- 요양기관 업무포털(<http://biz.hira.or.kr>)/신청 및 자료제출/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제출

나.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및 제출시기

- 시스템 오픈일: 2015년 11월 1일
- 제출시기: 전전월에 발생한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제출

- 최초 자료제출: '15.10월 진료분 자료→'15.12월 20일까지 제출
- '14.9.1(급여기준 고시 시행일)~'15.9월 진료분 자료→ 요양기관 업무부담 고려 '16.12.31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

다. 자료제출 방법: 붙임자료 참조

붙임: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「약제감수성검사결과」 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1부.
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